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2. 2. 3.(금)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4인)
4. 불참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1인)
5. 회의내용
 - ① 성원보고
 - ② 국민의례
 - ③ 개회선언
 -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
 - ⑤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⑥ 의결사항

가.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관한 건 - (2012-06-020)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분쟁으로 부터의 시청자 피해 방지 및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 ‘재송신 분쟁해결 절차 보완’,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 신설’ 및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제도 개선’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 ‘역내 의무재송신 범위’ 및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 개선대책과 함께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
- 주요 내용

① 재송신 분쟁해결 절차 보완

- (조정 절차 개선) 방송분쟁 일방 당사자의 조정 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방송법시행규칙 제15조 개정)
- (직권조정 제도 도입) 재송신 분쟁 등 심각한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통위가 당사자의 조정신청 없이도 분쟁 해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정 제도 도입)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통위 결정에 대해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제도를 신설

②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 신설

-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권 침해를 긴급히 회복하기 위하여 방송 재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한 방송 유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 FCC는 재송신 분쟁 기간 중에는 기존 계약대로 방송을 유지토록 하는 규칙을 운용 중 (Standstill order)

③ 지상파방송 역내재송신 제도 개선

- 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구현을 위해 위성방송사업자도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의 경우에만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함
 - ※ 현행법은 SO의 경우 지상파방송 역외재송신의 경우에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위성방송사업자(KT SkyLife)의 경우 역내·외 재송신 모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제78조4항)

○ 향후 계획

- '12. 2월 : 방송법 개정(안) 위원회 보고 및 개정 추진

7] 보고사항

가. 중계유선방송(RO) 정책방안(안)에 관한 사항

- 지역밀착형 방송매체로서 소외지역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의 매체역할 정립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내용
 - ① RO 역할 정립 방안
 - 역무가 구분되는 유료방송매체로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 SO·위성·IPTV 등 다른 유료매체와 경쟁(경쟁역할)하도록 하거나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지상파방송의 난시청해소를 위한 보조매체(보조역할)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
 - ② 지원방안
 - (확장적 방안) RO에게 경쟁역할 부여 시, 신규허가 또는 사업구역 확대 등을 통해 사업활성화 및 다른 유료방송매체와의 경쟁촉진을 유도하는 방안 고려
 - (소극적 방안) RO에게 보조역할 부여 시, 현재의 역할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방송법상 역무범위 명확화, 일부 송출범위 확대(보도PP 등) 및 디지털전환을 위한 장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방안 고려
- 향후일정
 - 업계(SO, RO 등) 및 시청자 의견 수렴 후 세부적 정책방안 마련('12.2월~)
 - 정책방안에 따라 관련 법·제도 개정 추진(필요시)

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기간통신역무통합, 심사사항 변경) 및 허가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내용
 - 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에 따른 심사기준 보완
 - ②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심사항목, 배점 등) 체계 조정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이 심사기준에 추가됨에 따라 별도 심사사항으로 신설하고, 배점을 상향조정(5점→10점)

- 허가신청법인의 직접적인 기간통신사업 제공능력과의 관련성이 약한 심사항목의 배점을 하향조정(16점→11점)

현행	개정(안)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등(50점)	1.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 능력(40점)
1.5 이용자 보호계획(5점)	1.5 (삭제)
1.6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6점)	1.6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3점)
1.8.1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5점)	1.7.1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4점)
1.8.2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구축(로밍) 계획의 우수성(5점)	1.7.2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구축(로밍) 계획의 우수성(4점)
2. 재정적 능력(25점)	2. 재정적 능력(25점)
3. 기술적 능력(25점)	3. 기술적 능력(25점)
<신설>	4.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 일시출연금의 상·하한액에 따른 가점항목 삭제

- 과거 주파수 할당공고 시 일시출연금(주파수 할당대가) 상·하한액을 정하고, 사업자 제시금액에 따라 허가심사에 가점(2점)을 부여했으나,
- 주파수 할당대가를 매출액 기준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과법 시행령이 개정('06.6)되어, 관련 가점항목을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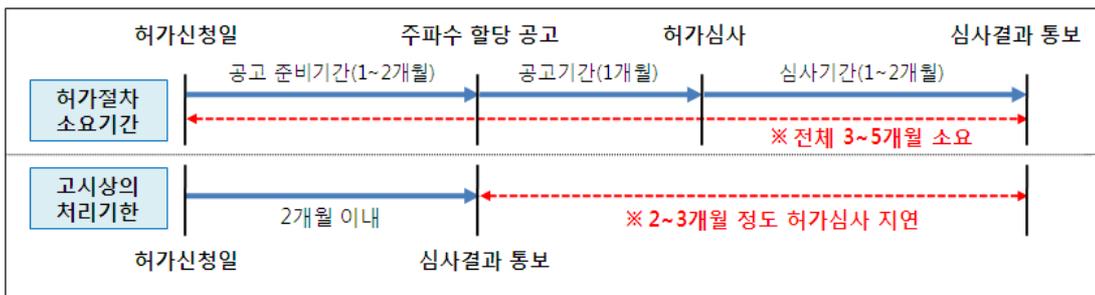
㉡ 기간통신역무 통합에 따라 허가단위로서의 세부 역무구분 폐지

- 역무통합에 따라 역무 구분은 폐지하되, '역무' 관련 용어를 '서비스'로 대체하여 신청법인이 제공서비스를 구분하여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 동일역무에 대해 사업구역이 구분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구역을 하나의 역무로 간주하는 관련 조항 삭제

② 현행 허가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 허가신청과 관련한 절차규정 보완

- 허가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주파수 할당 공고기간 중 주파수할당 신청과 함께 허가신청 하도록 하여 허가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소



㉠ 계량평가 심사항목의 평가방법(기준점수) 개선

-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과 관련된 계량평가 시 자료 미제출 및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기준점수(최저점)를 하향조정(60점→40점)하여 신청법인간 변별력을 높이고, 자금조달능력 평가를 강화

㉡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제한 근거 마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신청법인의 진입을 유도하고, 법인설립 후 안정적인 기간통신사업 수행을 담보

㉢ 허가신청법인의 구성주주와 관련된 제출서류 보완

- 허가신청법인과 구성주주간 출자확약서, 출자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구성주주의 일반현황(연혁, 사업목적, 종업원수, 재무현황 등) 및 현물출자 시 출자내역과 감정평가서 등 허가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보완

③ 기타 개정사항

㉣ 회계기준변경에 따른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명 정비

주요 계정과목		개정 사유
현행	개정안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른 과목명 변경
감가상각총당금	감가상각누계액	
고정부채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총당금	퇴직급여총당부채	
기타부채성총당금	기타부채성총당부채	
판매비와일반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경상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따른 신설 과목
(신 설)	계속사업이익 법인세비용	
	계속사업이익	
	중단사업손익	

- ㉤ 처리기한 표시단위 변경 및 허가심사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심사반을 통일하고, 일부 용어를 실제에 부합하도록 변경

변경내용		변경 사유
현행	개정안	
1개월, 2개월, 3개월	30일, 60일, 90일	•행정규칙서식 일괄개정('10.1월)으로 '개월수' 단위가 '일수'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자격심사반, 계량평가반, 비계량평가반 구성·운영	허가심사추진반	•각종 심사반 등을 하나로 통일
의견청취	청문	•실제 심사의 내용과 관행에 부합하는 용어로 변경

○ 향후 추진일정

- '12. 2월 ~ 4월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 '12. 4월말 : 위원회 의결 및 시행

※ 고시 개정 완료시점까지는 허가신청 접수를 포함한 제반 허가절차를 보류하고, 고시 개정 후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

다. 미디어렐 입법 이후 중소방송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의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방향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내용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중소방송을 지원할 계획임

① 네트워크 지역방송의 전과료는 미디어렐 허가심사 및 허가조건 부과로 지원

- 미디어렐 허가심사시 중앙-지역 방송사간 협의에 기반한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허가조건 부과를 통해 이를 보장

② 중소방송의 결합판매는 결합판매지원 고시 제정을 통해 지원

- 중소방송의 최근 5년간 결합판매 비율을 고시하고, 공·민영렐에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부과

③ 네트워크 지역방송사의 자체광고판매 지원

- 미디어렐 허가시 지역방송사 자체광고의 판매지원 방안을 평가하고, 공·민영렐의 지역지사 설립·운영 등 지역방송사 자체광고 판매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 등으로 부과

④ 기타 정책적 지원

- 지역민방의 자체 편성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중소방송이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방송사에 제작 협찬 기 허용 ('11. 8월)

- 중소방송의 경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 검토

8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2. 2. 15(수).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1:35)